

취·창업전공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 : 2012. 6. 29.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20. 3.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처에 속하는 취·창업준비하는 취업동아리와 전공동아리(이하“동아리”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범위) 동아리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조(등록요건) ①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33조 내지 제39조, 제41조에 부합되는 활동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5인 이상
3. 설립목적과 활동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함

② 동아리는 지도위원(지도교수)을 전임교원(외국인교수 제외) 이상으로 추대한다.

제4조(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개강 후 신청서를 산학협력처에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취·창업 전공동아리활동 등록 신청서(신규 또는 재등록)
2. 회원명단
3. 기타

제6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총학생회칙에 따른다.

② 동아리 대표(부대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지도위원과 산학협력처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외국인교수 제외) 중에서 동아리 회원이 추대한다.

② 지도위원은 해당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이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 다른 교수(임시지도위원)에게 일정 기간 대리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6-1-5 취·창업전공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8조(재정)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아리 재정지원은 활동계획서(예산서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심사 평가하여 학기당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③ 창업동아리에는 창업동아리의 활성 증진을 위하여 매 학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내외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 동아리는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지원금(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평가기준)①평가기준표

목 차	점 수	비 고
정기모임 활동회수	회당 2점	최대 20점
외부 봉사활동	20점	학기당 3회 이상 실시
	15점	학기당 2회 실시
	10점	학기당 1회 실시
대회 수상(전국대회 기준)	대상 10점, 기타 3점	기타는 대상 이외의 수상
활동보고서 정성적평가	10점	평가자: 처장, 부처장

②지원금 집행기준

집 행 가 능 내 용	집 행 불 가 능 내 용
1. 활동을 위한 재료비(식재료, 미용 재료 등)	1. 지도교수 선물비
2. 자료 복사비, 문구류	2. 공과금, 시설 사용료
3. 식비, 간식비, 대중교통비	3. 각종 수당성 경비 지급 불가
4. 기타 동아리 활동 관련 비용	4. 기타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제10조(활동) ① 동아리 대표는 매 학기초 활동계획서를 스마일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계획하여 활동한 결과보고서(예산사용에 대한 결산 (영수증 포함)를 매학기 시작 전까지 스마일시스템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호에 위배 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교내학칙에 위배 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 2. 학기 중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할 경우
- 3. 기타 동아리 활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통폐합 할 수 있다.

제12조(동아리실 사용) ① 별도의 동아리실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취·창업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과의 실험실습실 이나 강의실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지도위원의 참여하여 사용하며 지도위원이

참여 할 수 없을 경우 지도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기간(시간)은 학기 중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② 동아리실 및 실험실습실과 강의실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열기 사용, 고성방가, 시설 및 비품 훼손망실행위, 취식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취침행위,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과 보건위생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며,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경미화에 힘써야 한다.

③ 동아리실 사용 금지기간은 방학기간 및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이며, 지도위원의 허가를 득한 후 산학협력처에서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비품관리) 동아리실 및 실험실습실과 강의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 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아리에서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1-5 취·창업전공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